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
개발 · 이용 · 보급 촉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성환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· 이용 ·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·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,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외부 공기열을 흡수 및 활용함으로써 기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 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임.

이에 EU·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, 공기열 히트펌프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

반면, 국내 법제도에서는 온도차에너지 중 수열·지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에너지는 제외하고 있어, 공기열 히트펌프의 보급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

특히,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에 있어 기존 보일러 중심의 난방 열 공급을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, 국내에서도 공기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공기열 히트펌프의 보급을 지원하는

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함. 따라서, 동 시행령이 규정하는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에너지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2조제4항 및 별표 1 개정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 중 “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”를 “별표 1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”로 한다.

같은 항의 별표 1(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)에 “제6호 공기열 에너지를 신설”하고, “가. 기준은 대기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, 나. 범위는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석탄을 액화·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) ①~③ (생략)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”란 <u>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말한다.</u>	제2조 (현행화 같음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”란 <u>별표 1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를 말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※ [별표 1]

현행	개정안		
<신설>	6.공기열 에너지	가. 기준	대기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
		나. 범위	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

열산업혁신과	
연락처	(044) 203 - 5143